

GD 메트로 타워 오피스텔 분양광고

청약 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수분양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2-841-5950)등을 통해 오피스텔 분양광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따른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6.04.03.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수분양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만 나이”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6.10.22.) 기준입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6.10.16.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 신청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6.10.16. 광고일과 다름)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하며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건전한 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에 가입,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톡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오피스텔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본 오피스텔은 타입별 900%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현황은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s://gdmetro.com)를 통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 신청	당첨자 발표	서류 접수 및 계약 체결
일 시	2026. 10. 27.(화) , 2026. 10. 28.(수)	2026. 11. 02.(월) 16:00 이후	2026. 11. 05.(목) ~ 2026. 11. 07.(토)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 방문신청의 경우 은행 영업시간 내)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방문계약 (10:00 ~ 17:00)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청약 Home 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청약 Home 앱	GD 메트로 타워 건본주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104-1)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오피스텔	O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과[2026-건축과-분양신고-2호(2026.10.16. 광고일과 다름)]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과 [2026-건축과-건축허가-27]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104-1 외 4필지

■ 대지면적 : 11,260.10㎡

■ 건축물 연면적 : 138,697.1712㎡ 중 B동 오피스텔 65,232.9532㎡

■ 건축물의 층별 용도

구 분	
지하 7층	저수조, 기계실, 정화조, 중수조
지하 6층	지하주차장, 기계실
지하 5층 ~ 지하4층	지하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소화수조
지하 3층 ~ 지하1층	지하주차장
지상 1층 ~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	업무시설(A동, 사무소), 커뮤니티시설
A동 4층 ~ 15층	업무시설(사무소)
B동 5층 ~ 18층	업무시설(오피스텔), B동 4층 피난통로/PIT
A동 16층, B동 19층	기계실, 피난안전구역, 헬룸실, 소화수조, 물탱크실
A동 17층 ~ 37층, B동 20층 ~ 40층	업무시설(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7층~지상37층 1개동(A동), 지하7층~지상40층 1개동(B동) 중 오피스텔 B동 770실

■ 주차대수 : 전체 1,004대 중 오피스텔 749대(분양대상 B동 427대)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여부 : 상대보호구역

■ 내진설계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으며, 동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산정한 내진성능은 최대지반가속도0.176g, 수평 메르칼리 진도계급 VII, 내진 1등급 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31년 3월 예정(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

※ 본 사업은 분양사업자(사업주체) 겸 매도인인 (주)비와이씨와 자금관리 대리사무자 신영부동산신탁(주)간의 분양관리신탁계약,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신영부동산신탁(주)에서 공급(분양) 대금을 관리합니다.

■ 공급면적 및 공급규모

(단위: 호실, m²)

타 입	공급호실(수)	공급면적(m²)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24A	160	24.6107	17.9460	42.5567	24.9610	67.5177	5.4437
24B	104	24.5135	17.9867	42.5002	24.8625	67.3627	5.4222
24C	8	24.9177	17.8174	42.7351	25.2723	68.0074	5.5116
24D	8	25.0149	17.7766	42.7915	25.3710	68.1625	5.5331
28A	160	28.9709	20.7344	49.7053	29.3834	79.0887	6.4081
28B	104	28.8737	20.7752	49.6489	29.2847	78.9336	6.3865
28C	40	28.5943	20.9360	49.5303	29.0014	78.5317	6.3248
28D	26	28.3999	21.0175	49.4174	28.8043	78.2217	6.2818
28E	2	28.8041	20.8481	49.6522	29.2141	78.8663	6.3712
28F	2	28.9985	20.7667	49.7652	29.4112	79.1764	6.4142
29A	8	29.3751	20.5650	49.9401	29.7931	79.7332	6.4975
29B	8	29.2779	20.6059	49.8838	29.6945	79.5783	6.4760
45A	40	45.7804	31.1993	76.9797	46.4317	123.4114	10.1261
45B	26	45.6604	31.2495	76.9099	46.3104	123.2203	10.0996
46A	2	46.1846	31.0299	77.2145	46.8419	124.0564	10.2155
46B	2	46.0646	31.0802	77.1448	46.7203	123.8651	10.1890
53A	40	53.5700	35.9962	89.5662	54.3322	143.8984	11.8491
53B	26	53.4500	36.0465	89.4965	54.2109	143.7074	11.8226
53C	2	53.8542	35.8771	89.7313	54.6206	144.3519	11.9120
53D	2	53.9742	35.8268	89.8010	54.7421	144.5431	11.9385
합계	770	-					

- 상가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및 관리실(MDF, 방재실 등),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실별 공용면적은 오피스텔 전체의 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면적(m²) × 0.3025 또는 면적(m²) ÷ 3.3058)
- 실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20(153호실)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타 입	공급호실(수)	공급대상(배정호실 수)		비고
		거주자 우선공급(20%)	일반공급(80%)	
24A	160	32	128	※ 분양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
24B	104	20	84	
24C	8	1	7	
24D	8	1	7	
28A	160	32	128	
28B	104	20	84	
28C	40	8	32	
28D	26	5	21	
28E	2	1	1	
28F	2	1	1	
29A	8	1	7	
29B	8	1	7	
45A	40	8	32	
45B	26	5	21	
46A	2	1	1	
46B	2	1	1	
53A	40	8	32	
53B	26	5	21	
53C	2	1	1	
53D	2	1	1	
합계	770	153	617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호실, 원 / VAT포함)

타입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0%	10%	10%	10%	10%	10%	
	공급 호실	라인	층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합계	계약시	2027.06.15.	2028.02.15.	2028.10.16.	2029.05.15.	2029.12.17.	2030.07.15.	입주예정일
24A	160	B동 14호~21호	20층~22층	165,028,398	180,937,820	18,093,782	364,060,000	36,406,000	36,406,000	36,406,000	36,406,000	36,406,000	36,406,000	36,406,000	109,218,000
			23층~26층	168,482,544	184,724,960	18,472,496	371,680,000	37,168,000	37,168,000	37,168,000	37,168,000	37,168,000	37,168,000	37,168,000	111,504,000
			27층~30층	171,941,223	188,517,070	18,851,707	379,310,000	37,931,000	37,931,000	37,931,000	37,931,000	37,931,000	37,931,000	37,931,000	113,793,000
			31층~34층	175,395,369	192,304,210	19,230,421	386,930,000	38,693,000	38,693,000	38,693,000	38,693,000	38,693,000	38,693,000	38,693,000	116,079,000
			35층~37층	178,854,048	196,096,320	19,609,632	394,560,000	39,456,000	39,456,000	39,456,000	39,456,000	39,456,000	39,456,000	39,456,000	118,368,000
			38층, 39층	182,308,194	199,883,460	19,988,346	402,180,000	40,218,000	40,218,000	40,218,000	40,218,000	40,218,000	40,218,000	40,218,000	120,654,000

24B	104	B동 14호~21호	5층, 6층	154,910,742	169,844,780	16,984,478	341,740,000	34,174,000	34,174,000	34,174,000	34,174,000	34,174,000	34,174,000	34,174,000	102,522,000
			7층~9층	156,633,282	171,733,380	17,173,338	345,540,000	34,554,000	34,554,000	34,554,000	34,554,000	34,554,000	34,554,000	34,554,000	103,662,000
			10층~13층	158,351,289	173,617,010	17,361,701	349,330,000	34,933,000	34,933,000	34,933,000	34,933,000	34,933,000	34,933,000	34,933,000	104,799,000
			14층~17층	161,796,369	177,394,210	17,739,421	356,930,000	35,693,000	35,693,000	35,693,000	35,693,000	35,693,000	35,693,000	35,693,000	107,079,000
24C	8	B동14호~21호	18층	164,461,773	180,316,570	18,031,657	362,810,000	36,281,000	36,281,000	36,281,000	36,281,000	36,281,000	36,281,000	36,281,000	108,843,000
24D	8	B동14호~21호	40층	185,304,507	203,168,630	20,316,863	408,790,000	40,879,000	40,879,000	40,879,000	40,879,000	40,879,000	40,879,000	40,879,000	122,637,000
28A	160	B동 2호~9호	20층~22층	191,319,798	209,763,820	20,976,382	422,060,000	42,206,000	42,206,000	42,206,000	42,206,000	42,206,000	42,206,000	42,206,000	126,618,000
			23층~26층	195,326,970	214,157,300	21,415,730	430,900,000	43,090,000	43,090,000	43,090,000	43,090,000	43,090,000	43,090,000	43,090,000	129,270,000
			27층~30층	199,329,609	218,545,810	21,854,581	439,730,000	43,973,000	43,973,000	43,973,000	43,973,000	43,973,000	43,973,000	43,973,000	131,919,000
			31층~34층	203,336,781	222,939,290	22,293,929	448,570,000	44,857,000	44,857,000	44,857,000	44,857,000	44,857,000	44,857,000	44,857,000	134,571,000
			35층~37층	207,343,953	227,332,770	22,733,277	457,410,000	45,741,000	45,741,000	45,741,000	45,741,000	45,741,000	45,741,000	45,741,000	137,223,000
			38층, 39층	211,351,125	231,726,250	23,172,625	466,250,000	46,625,000	46,625,000	46,625,000	46,625,000	46,625,000	46,625,000	46,625,000	139,875,000
28B	104	B동 2호~9호	5층, 6층	179,697,186	197,020,740	19,702,074	396,420,000	39,642,000	39,642,000	39,642,000	39,642,000	39,642,000	39,642,000	39,642,000	118,926,000
			7층~9층	181,691,706	199,207,540	19,920,754	400,820,000	40,082,000	40,082,000	40,082,000	40,082,000	40,082,000	40,082,000	40,082,000	120,246,000
			10층~13층	183,686,226	201,394,340	20,139,434	405,220,000	40,522,000	40,522,000	40,522,000	40,522,000	40,522,000	40,522,000	40,522,000	121,566,000
			14층~17층	187,679,799	205,772,910	20,577,291	414,030,000	41,403,000	41,403,000	41,403,000	41,403,000	41,403,000	41,403,000	41,403,000	124,209,000
28C	40	B동 11호, 12호	20층~22층	183,241,992	200,907,280	20,090,728	404,240,000	40,424,000	40,424,000	40,424,000	40,424,000	40,424,000	40,424,000	40,424,000	121,272,000
			23층~26층	187,076,910	205,111,900	20,511,190	412,700,000	41,270,000	41,270,000	41,270,000	41,270,000	41,270,000	41,270,000	41,270,000	123,810,000
			27층~30층	190,916,361	209,321,490	20,932,149	421,170,000	42,117,000	42,117,000	42,117,000	42,117,000	42,117,000	42,117,000	42,117,000	126,351,000
			31층~34층	194,751,279	213,526,110	21,352,611	429,630,000	42,963,000	42,963,000	42,963,000	42,963,000	42,963,000	42,963,000	42,963,000	128,889,000
			35층~37층	198,590,730	217,735,700	21,773,570	438,100,000	43,810,000	43,810,000	43,810,000	43,810,000	43,810,000	43,810,000	43,810,000	131,430,000
			38층, 39층	202,425,648	221,940,320	22,194,032	446,560,000	44,656,000	44,656,000	44,656,000	44,656,000	44,656,000	44,656,000	44,656,000	133,968,000
28D	26	B동 11호, 12호	5층, 6층	166,469,892	182,518,280	18,251,828	367,240,000	36,724,000	36,724,000	36,724,000	36,724,000	36,724,000	36,724,000	36,724,000	110,172,000
			7층~9층	168,319,356	184,546,040	18,454,604	371,320,000	37,132,000	37,132,000	37,132,000	37,132,000	37,132,000	37,132,000	37,132,000	111,396,000
			10층~13층	170,168,820	186,573,800	18,657,380	375,400,000	37,540,000	37,540,000	37,540,000	37,540,000	37,540,000	37,540,000	37,540,000	112,620,000
			14층~17층	173,867,748	190,629,320	19,062,932	383,560,000	38,356,000	38,356,000	38,356,000	38,356,000	38,356,000	38,356,000	38,356,000	115,068,000
28E	2	B동11호,12호	18층	176,342,766	193,342,940	19,334,294	389,020,000	38,902,000	38,902,000	38,902,000	38,902,000	38,902,000	38,902,000	38,902,000	116,706,000
28F	2	B동11호,12호	40층	205,290,504	225,081,360	22,508,136	452,880,000	45,288,000	45,288,000	45,288,000	45,288,000	45,288,000	45,288,000	45,288,000	135,864,000
29A	8	B동2호~9호	40층	214,302,108	234,961,720	23,496,172	472,760,000	47,276,000	47,276,000	47,276,000	47,276,000	47,276,000	47,276,000	47,276,000	141,828,000
29B	8	B동2호~9호	18층	190,308,939	208,655,510	20,865,551	419,830,000	41,983,000	41,983,000	41,983,000	41,983,000	41,983,000	41,983,000	41,983,000	125,949,000

45A	40	B동 13호, 22호	20층~22층	318,733,362	349,460,580	34,946,058	703,140,000	70,314,000	70,314,000	70,314,000	70,314,000	70,314,000	70,314,000	70,314,000	210,942,000
			23층~26층	325,410,471	356,781,390	35,678,139	717,870,000	71,787,000	71,787,000	71,787,000	71,787,000	71,787,000	71,787,000	71,787,000	215,361,000
			27층~30층	332,083,047	364,097,230	36,409,723	732,590,000	73,259,000	73,259,000	73,259,000	73,259,000	73,259,000	73,259,000	73,259,000	219,777,000
			31층~34층	338,760,156	371,418,040	37,141,804	747,320,000	74,732,000	74,732,000	74,732,000	74,732,000	74,732,000	74,732,000	74,732,000	224,196,000
			35층~37층	345,432,732	378,733,880	37,873,388	762,040,000	76,204,000	76,204,000	76,204,000	76,204,000	76,204,000	76,204,000	76,204,000	228,612,000
			38층, 39층	352,109,841	386,054,690	38,605,469	776,770,000	77,677,000	77,677,000	77,677,000	77,677,000	77,677,000	77,677,000	77,677,000	233,031,000
45B	26	B동 13호, 22호	5층, 6층	290,778,351	318,810,590	31,881,059	641,470,000	64,147,000	64,147,000	64,147,000	64,147,000	64,147,000	64,147,000	64,147,000	192,441,000
			7층, 8층	294,010,380	322,354,200	32,235,420	648,600,000	64,860,000	64,860,000	64,860,000	64,860,000	64,860,000	64,860,000	64,860,000	194,580,000
			9층	302,917,725	332,120,250	33,212,025	668,250,000	66,825,000	66,825,000	66,825,000	66,825,000	66,825,000	66,825,000	66,825,000	200,475,000
			10층~13층	306,249,480	335,773,200	33,577,320	675,600,000	67,560,000	67,560,000	67,560,000	67,560,000	67,560,000	67,560,000	67,560,000	202,680,000
			14층~17층	312,903,924	343,069,160	34,306,916	690,280,000	69,028,000	69,028,000	69,028,000	69,028,000	69,028,000	69,028,000	69,028,000	207,084,000
46A	2	B동13호,22호	40층	355,219,479	389,464,110	38,946,411	783,630,000	78,363,000	78,363,000	78,363,000	78,363,000	78,363,000	78,363,000	78,363,000	235,089,000
46B	2	B동13호,22호	18층	315,673,587	346,105,830	34,610,583	696,390,000	69,639,000	69,639,000	69,639,000	69,639,000	69,639,000	69,639,000	69,639,000	208,917,000
53A	40	B동 1호, 10호	20층~22층	360,106,053	394,821,770	39,482,177	794,410,000	79,441,000	79,441,000	79,441,000	79,441,000	79,441,000	79,441,000	79,441,000	238,323,000
			23층~26층	367,648,965	403,091,850	40,309,185	811,050,000	81,105,000	81,105,000	81,105,000	81,105,000	81,105,000	81,105,000	81,105,000	243,315,000
			27층~30층	375,187,344	411,356,960	41,135,696	827,680,000	82,768,000	82,768,000	82,768,000	82,768,000	82,768,000	82,768,000	82,768,000	248,304,000
			31층~34층	382,730,256	419,627,040	41,962,704	844,320,000	84,432,000	84,432,000	84,432,000	84,432,000	84,432,000	84,432,000	84,432,000	253,296,000
			35층~37층	390,273,168	427,897,120	42,789,712	860,960,000	86,096,000	86,096,000	86,096,000	86,096,000	86,096,000	86,096,000	86,096,000	258,288,000
			38층, 39층	397,816,080	436,167,200	43,616,720	877,600,000	87,760,000	87,760,000	87,760,000	87,760,000	87,760,000	87,760,000	87,760,000	263,280,000
53B	26	B동 1호, 10호	5층, 6층	328,647,033	360,329,970	36,032,997	725,010,000	72,501,000	72,501,000	72,501,000	72,501,000	72,501,000	72,501,000	72,501,000	217,503,000
			7층, 8층	332,300,631	364,335,790	36,433,579	733,070,000	73,307,000	73,307,000	73,307,000	73,307,000	73,307,000	73,307,000	73,307,000	219,921,000
			9층	342,368,424	375,374,160	37,537,416	755,280,000	75,528,000	75,528,000	75,528,000	75,528,000	75,528,000	75,528,000	75,528,000	226,584,000
			10층~13층	346,130,814	379,499,260	37,949,926	763,580,000	76,358,000	76,358,000	76,358,000	76,358,000	76,358,000	76,358,000	76,358,000	229,074,000
			14층~17층	353,655,594	387,749,460	38,774,946	780,180,000	78,018,000	78,018,000	78,018,000	78,018,000	78,018,000	78,018,000	78,018,000	234,054,000
53C	2	B동1호,10호	18층	356,330,064	390,681,760	39,068,176	786,080,000	78,608,000	78,608,000	78,608,000	78,608,000	78,608,000	78,608,000	78,608,000	235,824,000
53D	2	B동1호,10호	40층	400,816,926	439,457,340	43,945,734	884,220,000	88,422,000	88,422,000	88,422,000	88,422,000	88,422,000	88,422,000	88,422,000	265,266,000

※ 오피스텔 타입별,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형(타입)별 상이하므로, 청약신청 시[공급금액 및 납부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 및 계약에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타입, 향,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호실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구. 등록세포함)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본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제연환풍, MDF, 종합방재실, 생활폐기물 처리장, 진입통로, 복도, 계단, 로비, 피난안전구역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있습니다.

-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라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대지지분은 분양당시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각 용도별 전용면적 합계로 비율 균등배분한 것을 각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계약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단수정리를 위한 오차는 일부 호실에 할애 하였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단지 대지중 일부 면적은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전용되어 있으며 전용면적은 단위세대 대지지분에 일부 분배, 포함되며, 전면공지는 임의로 전용,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는 사용승인전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며,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및 입체보호통로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이후 유지관리 책임이 건축물관리주체에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1층, 지하2층 근생, 오피스 주차장의 통행로(오피스텔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주차장 출입 위한 통로)의 일부분이 오피스텔의 공용면적 산정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임의로 전용,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지적정리, 진입로(가감속차로) 등 기부채납, 확정측량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정리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지지분에는 전체 사업부지내 공개공지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이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대상은 770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신청 시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지하철, 도로교통 및 기타 건축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하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도 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는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1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사업관계자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금융시장의 변화,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조건과 취급 등이 불가(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등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수분양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하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상기 대출협약을 통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은 수분양자는 대출 상환을 완료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통해 각 타입별로 접수합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그리고 정부정책 및 해당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급금액에는 별도 옵션(유상 옵션)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선택품목은 수분양자가 선택하는 사항으로 추후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2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하여 분양호실 2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우선 선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청약해야 우선분양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분양광고일(2026.10.22.)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호실은 무작위로 공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청약 신청은 1인당 1실(건) 청약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신청 유형별(타입별) 900%의 예비당첨자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증명서류는 분양광고일(2026.10.2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관계자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2026.10.27.(화) , 2026.10.28.(수) 09:00~17:30 (은행 방문신청의 경우 은행 영업시간 내)	2026. 11. 02.(월) 16:00 이후	2026. 11. 05.(목) ~ 2026. 11. 07.(토) 10:00 ~ 17: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타입)별 무작위 결정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GD 메트로 타워 건본주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104-1)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모든 은행(청약 참가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인터넷청약신청 안내

구분	내 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오피스텔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 완료 → 신청내역 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신청 시간 : 09:00 ~ 17:30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 신청금	내 용
모든 타입 공통	3,000,000원 (금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일반 공급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 대리신청 시 일반공급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참고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청약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 1항에 의거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이 2일(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동일타입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 규정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6.10.2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환불계좌로 등록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배치구조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및 오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법인 명의로 계약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자납하여야 합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동, 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신청 타입별 900%를 무작위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확인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6. 11. 02.(월) 16:00 이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 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 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오피스텔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 호수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동, 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타입별 900%의 예비당첨자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예비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신청자가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서류접수 및 계약일정·장소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기간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계약 체결 시)
2026. 11. 05.(목) ~ 2026. 11. 07.(토)	10:00 ~ 17:00	GD 메트로 타워 건본주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104-1)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계약금 납부 :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호수 및 수분양자 성명 기재)하여야 유효하며,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합니다.
(예 : B동1001호 당첨자의 경우 → 'B동1001홍길동'으로 입금시 기재)
- 청약 당첨자의 청약 신청금도 일괄 환불되므로, 계약 시 계약금 전액을 준비하여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다른 계좌입금 또는 건본주택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일정 및 방법은 당첨자 계약 체결 기간 전/후로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신한은행	140-016-466800	신영부동산신탁(주)	입금 시 호실과 수분양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B동1001호 당첨자의 경우 → 'B동1001홍길동'으로 기재)
중도금 / 잔금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청약 당첨자의 청약 신청금도 일괄 환불되므로, 계약시 계약금 전액을 준비하여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1호에 따라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당첨자는 반드시 계약체결 시간 만료 이전에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계약 시 구비서류 참조)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공통기본서류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대한민국 정부 전자수입인지	본인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상의 공급금액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분할 납부 ※ 인지세 납부금액은 아래 유의사항 참고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는 우체국, 은행에 방문,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 접속, 구매 및 출력
본인 계약시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본인발급용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계약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이 불가 합니다) ※ 전자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발급
법인 계약시	대표이사 신분증	대표이사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법인 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
대리인 계약시 제출 서류 (본인 이외는 모두 제3자)	위임장	계약자	- 건본주택 비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계약자 본인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분양광고일(2026.10.22.)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 계약 시 법인 대표자 명의로 당첨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하며, 직원 등 대표자가 아닌 경우 당첨되더라도 법인 명의로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금은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수분양자 성명 및 동호수를 기재(예 B동10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B동1001홍길동'으로 기재)하여 무통장입금하시길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사로 귀속됩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및 인접부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소음, 진동 등),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대지 내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의 책임임을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귀속됩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공급금액은 최초 오피스텔 분양광고 공급금액 이하로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 및 이메일 주소(전자 세금계산서 수령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추후 관리주체 등에 의해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수분양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관리비 및 부대시설 운영비, 기타 서비스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기타 계약조건으로 수분양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공급계약서상 금액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시행사)와 수분양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 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 (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부동산거래신고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수분양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대상증서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 2024.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구분	계약서 기재금액	총 납부 세액	계약자 부담 금액
	당 오피스텔 분양 계약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추후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대출금액 : 본 오피스텔은 분양금액의 최대 60% 범위 내에서 대출 앞선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그리고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조건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신청 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및 일반임대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로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앞선하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출 불가로 인한 자납 또는 입주지정기간 전에 받은 중도금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는 그 금액을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실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며, 이 경우 중도금대출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금융관련 정부 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도 등 모든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가격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을 인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대출금 전액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법인 명의로 계약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가 본인의 재원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본주택(분양사무소)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계약자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 (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입주 및 전매제한 안내

■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준공예정일 2031년 2월 예정, 입주예정일 2031년 3월 예정(구체적인 입주지정일은 추후 개별통보하기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판매시설의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표시 재산의 하자보수책임,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0의2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사전방문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 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득하여 권리의무승계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인의 공급계약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책임을 집니다.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 법령 제·개정 등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분양자는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승인(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 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사항

- 본 분양광고의 제반내용 및 건립된 건보주택은 건축허가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도로 및 지하철 등 교통망 및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지하철, 병원, 문화편의시설 등) 설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분양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2014.12.0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방식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선)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호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오피스텔(부대복리시설 포함), 오피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동일한 사업부지에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이며, 대지지분 및 공유시설물을 공유합니다.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원 및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로 일정기간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단지 내 입주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수인하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전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시설물 및 대지는 오피스텔, 오피스(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 전체 입주민을 위한 시설이므로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시설이므로 수분양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명칭, 외부색채, 조형물, 공개공지 및 기타 계획 및 재료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현장 시공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설계변경(단, 경미한 변경 사항 제외)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며,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경(연면적 3%이상 변경 등)시에는 수분양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및 마감재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신종바이러스 등)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분양자는 구로디지털단지역 2호선 근접지역으로 열차소음, 진동을 사유로 시행자, 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분양자가 분양 후 매도 등으로 소유권변동시 매매계약 등 관련 계약에 위 조건을 승계토록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하 1층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처리장)과 관련하여 향후 관리주체는 영등포구청 과 협의하여 폐기물처리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초등학교 등 학교배정은 해당 관할구청 및 교육지원청에 최종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 및 사업지 인근 민간 및 공공시설, 기반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홍보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규정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분양안내문, 분양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이나 신분증/등본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분양자는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을 [주민등록등본 포함] 사업주체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는 분명히 인지하였으며,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시 동일 평면이지만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분양금액은 각 호실의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형별 공급금액의 상이와 관련된 사항을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실은 공사 시행 중에 별도 통보 없이 품질 관리를 위해 샘플하우스(Mock-up)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 불량거래자 등 수분양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납부조건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시 수분양자의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은 사전에 지정한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수분양자의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의 사유(담보대출불가 등)로 사업주체에 빠른 이행요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할 필요 없음.)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 보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거 수분양자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수분양자 손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인허가

- 건축허가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 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단위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축물의 색채, 형태(외벽 및 측벽 줄눈, 저층부 및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단위실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및 난간 형태 및 색상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 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 과장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 입니다.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건본주택, 단지 배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조경면적 등), 각종 인쇄물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총 대지지분을 면적을 타입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실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경미한 범위내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 위치 등)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지만, 인·허가 과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오피스텔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도시가스,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광고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분양광고 이전 제작·배도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십시오.
- 분양대상물의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이 삽입된 분양 관련 각종 홍보물(팜플렛, 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타입별 단위실 평면도,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의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단위실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도서와 모형, CG 등 분양광고물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시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24A, 28A타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24A, 28A타입 외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가구의 형태 등은 견본주택 건립타입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환경과 부지 내 계획과 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실의 마감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에는 인허가청에 제출된 마감재리스트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 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단위실 내부에 설치된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단위실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VR 및 단위실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통합스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냉방전용), 전열교환기 등은 실제 시공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마감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위치는 실제 시공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도기구, 수전류, 배수구, 온도조절기 등 설비 기구류들의 제조사,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됩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환기구(DA),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설외기 등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벽체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단위실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공사 시 냉방전용(공기청정기능없음)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스위치, 등의 제품은 동등 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구현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모형의 경관 조명 및 입출차 차단기는 연출된 것으로 실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류(시스템가구 포함)의 바디 및 도어 마감재는 본공사시 동등이상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및 주동계획

- 건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건축허가도서 기준으로 하고,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단위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 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 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등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정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계법령에 따른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계약전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건축물의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층별, 향, 호수별 위치에 따라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일조량의 감소,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재활용 분리수거공간, 음식을 쓰레기처리, 재활용 창고, 자전거 보관시설 등)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이용 및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배치 상 저층단위실 및 특정단위실은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단위실이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일부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단위실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단위실 및 저층부 인접단위실은 공동개방공간을 사용하는 입주민에 의한 소음 및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단위실에서는 단지 내 야간조명 효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함(재활용 보관소 포함)은 1개소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단위실 위치 및 주동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이동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 필로티 및 저층 인접단위실은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시선간섭 등의 사생활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단위실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창호형태, 난간종류, 조경, 고층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강기를 사용하여 이사하여야 합니다.
- 단지외 외벽도로 사이의 경계(담장)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동별로 진입동선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전 단지 모형 및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시 및 소방준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의 보행시 경사도에 따라 보행의 지장과 미끄러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공간 및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부위에는 식재 및 차폐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단위실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등급 VII-내진1등급 입니다.
- 본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동 표시, 동 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필로티 내부에는 석재, 석재뿔칠, 도장 등이 혼용되어 시공됩니다.
- 우편물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외벽부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주동 측벽 문양,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벽체에 세대별 환기용 캡(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등 환기용)이 설치되며 모형 및 조감도등에 표현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승강기 홀 공용부 창 의 경우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실/공용부 창호의 제작사 및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의 높이와 형태는 고도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동 측벽 로고의 위치 및 개소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동 및 외부 시설의 외관/색채 등의 공용부 설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개인 취향에 따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비상차로의 폭, 경계석 위치, 형태, 회차동선, 회전반경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와 내부에는 레벨 차이로 옹벽, 조정석 쌓기 등의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구간, 높이, 형태,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계단과 경사로의 레벨, 형태, 마감, 난간 높이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정공간에 D/A (설비 환기구) 의 노출이 있으며, 보행공간에 인접한 경우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1층에 공개공지2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며,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대지안의 공지 구간으로 외부인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성되는 공개공지의 디자인, 식재 배치, 시설물, 포장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 형태, 색채, 마감, 규격,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정시설과 인접한 단위실은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조정시설은 공용시설로 개별단위실이 점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정 수목의 수종, 규격, 식재 위치는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단위실에 일조와 조망 간섭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차량 활동구역 및 에어매트 주변에는 소방구조활동을 위하여 수목 식재가 제한되며, 준공시 소방점검 의견에 따라 식재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정 수목의 생육을 위해 수목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임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정 면적, 시설물 및 포장의 형태, 색채, 마감, 패턴, 위치, 규격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1층에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규모, 위치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1층,지상2층,지상3층,지상4층,옥상층에 조정공간 등이 설치 될 예정이며, 인허가 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휴게시설, 관리시설, 옥상조경 등의 조정시설 인접단위실에는 소음, 진동, 시야 간섭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인 개인의 취향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 설치 및 변경을 요구 할 수 없으므로 건본주택 내 모형을 통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볼라드등, 수목투사등, 포인트조명 등 각종 옥외 경관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단위실은 빛의 산란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경관조명의 위치, 사양 및 수량 등은 실시설계 및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인근 아파트와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조정 수목, 시설물, 포장의 추가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후 조정 수목, 시설물, 포장 등의 유지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민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수목 고사, 시설물 및 포장의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정화조, 우수조, 중수조는 인허가,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일부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덕트 및 환기시설이 해당동의 단위실 인근 공용부PD 및 외벽, 옥상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계 후 유지관리 및 주기적인 청소는 관리 주체의 의무임에 따라 관리 소홀로 인한 기능상실, 냄새, 환경 민원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용부 형태는 구조계산에 따라 추가 구조물이 생기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조정 유지 관리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한 조정수 고사 및 조정하자는 시공사 책임이 없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정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입주민이 소유한 대지이나 공공에 이용하도록하는 단지 내,외부의 공개공지, 도로 등은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 (보도)로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공사여건 및 상품 개선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수 있습니다.
- 주민편의 시설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단지 북측과 남측에 방수설비가 설치되며, 북측 기존 방수시설 증축, 남측 소공원(가로공원 예정) 하부에는 저류조가 설치되며 준공시 영등포구에 기부채납됩니다. 수분양자는 분양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설치내용을 확인해야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지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단지의 도로 및 시설물등은 본건축물 사용승인시 각종 심의, 공사지연등으로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건축물 사용승인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건축물 사용에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당건으로 인해 잔금납부 거부, 각종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 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비상 상황에서 소방차등의 비상 차량에 한해 이용할수 있으며, 일반차량이 이용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대지중 일부면적이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전용되어 있으며, 전용면적은 단위세대 대지분배 분배, 포함되며, 전면공지는 임의로 전용,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 본 단지는 오피스텔, 오피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시설로서 오피스텔의 주차장은 749대로 구성되며, 오피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255대로 별도 계획되어 있으며 인허가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지상1층 및 지하1~3층 주차장에 설치(급속 18대, 완속 106대)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동측에 위치하며, 인근 저층 단위실은 진입램프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에는 결로, 화재, 분진 등으로 인한 환기 및 예방의 목적으로 환기덕트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의 주차장 주출입구는 법적기준에 따라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하의 택배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지하2층 이하는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각종 지하출입구 편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대수 및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기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 부위의 마감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차장 바닥마감은 설계에 배수 구배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 외벽과 주차구획의 이격으로 인해 일부 주차통로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정화조, 기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수조, 기계실 등 결로발생 확률이 높은 공간에 대해서는 추가 하자 방지를 위해 천장과 벽, 바닥의 도장 등 마감공사를 미시공 할수도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관련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구획공간 또는 자전거보관소, 조경구간 측면 등 내외부에 설치되고, 추후 현장 여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한 호실과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팬 가동에 따른 바람, 열감, 연기 등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또는 사업주체 협의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일부 호실의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커뮤니티 내부 프로그램, 마감재, 평면계획, 가구 및 장비배치 등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과 및 디자인은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오피스텔 이용 시설물로 승인되었고, 오피스텔 시설물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입주 후 사용 및 운영방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 복리시설 : 북카페/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게스트룸, 코인세탁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계획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 지상1층, 지상2층
 - 북카페/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게스트룸, 관리사무소 : 지상3층
 - 펌프실, 저수조(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용) : 지하7층, 지하5층, 피난안전구역층, 옥탑층
 - 헬룸(소방용) : 지하5층, 지하2층, 지하1층, 지상2층 피난안전구역층, 옥탑층
- 관리사무소 및 부대시설의 도서, 기타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매트류 제외) 및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부대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인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 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내 공용창고는 지하층에 규격별(가로 0.9m × 세로 0.9m × 높이 1.8m)로 총 200개가 계획되어 있으나, 현장 상황,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및 설계 변경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용창고의 세부 관리 및 사용 규정은 사용승인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세대창고는 철제 메쉬 재질로 시공되어 보관 물품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평면, 가구 및 마감재

- 견본주택 미건립단위실은 24A, 28A타입과 단위실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달로그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별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실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합니다.
- 각 실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충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오피스텔의 특성상 향후 층간/단위실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단위실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기본제품 외 추가 세탁기 설치공간은 제공되지 않으며 제품규격에 따라 추후 타제품으로 교체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도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친환경 스톤플로링,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탁기 설치공간/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허용범위 이내의 오차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욕실 출입문은 본공사 시 PVC계통(ABS 등) 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단위실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복도 또는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욕실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단위실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엔지니어드스톤의 제조사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친환경 스톤플로링 자재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욕실, 주방 등은 타일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견본주택과 동일한 패턴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디딤판/결레반이,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과 인조대리석 등은 자재특성상 본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본공사시 패턴 및 색상 등이 견본주택 건립타입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마감재(친환경 스톤플로링 자재, 주방 상판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과 무관합니다.
- 단위실 내 바닥재인 강마루의 구성 부재 중 심재(코어)의 재료는 내수합판 또는 고밀도 섬유판이 사용됩니다.
- 본공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코킹 두께 및 색상등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위실 내 커튼박스 길이는 천장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사 시 욕실 천정에 위층세대의 급수급탕분배기와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실 금속도어(현관 방화문) 및 목창호, PL창호의 문짝,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시스템 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실 내부에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실 목문 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시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현관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타입에 따라 침실 창호 크기가 다르게 설계 되었습니다.
- 주방 상판 싱크대 하부에 설치되는 물끓기 흡은 본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길이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벽체두께 창호크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적/건식벽체 접합부 등 이질 재료가 접하는 부분에서 균열방지 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건식벽체 석고보드 구성은 부위별로 상이합니다.
- 상부호실 욕실 배관이 하부호실 욕실 천정속에 설치되며 상부 호실 욕실배관 보수 시 하부호실은 협조해야 합니다.
- 호실내 천정고는 실시공시 바닥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변경될수 있으며, 욕실 벽과 바닥의 타일 나누기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3등급으로 시공되며, 공사 진행 및 인허가과정(설계 변경등)에 따라 등급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관련

- 외부 창호의 프레임, 색상, 형태, 개구부의 크기, 하드웨어, 유리 사양 등은 성능개선, 안정성 검토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및 제조사는 내풍압을 고려하여 단위실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 방향, 색상,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프레임 접합 등에 따라 실내에서 프레임 사이에 줄눈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단위실 외측 창호에 방충망이 설치되며, 내측(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배연창이 적용되는 실 및 창쪽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해당 창쪽을 강제 개폐시 관련 장치가 파손됨으로 비상시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잠금장치 또한 설치 불가합니다.
- 소방관진입창의 설치 단위실은 본 공사시 관청 및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기계,전기,통신 설비 관련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 의거 단지 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 옥탑층
 - 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일부 지상층(EPS/TPS) / 일부 지하층(EPS/TPS)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CCTV는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수량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CTV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방법과 안전, 편의성을 위해 설치 동意的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은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준공 이후 추가요금이 분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내부에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지상 개폐기, 패드, 전주, 변압기, 맨홀 등)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맨홀 등)과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시설물(정압기, 패드, 맨홀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특정 단위실은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침해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고, 시설물의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 도시가스공급자(서울도시가스)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일부 층은 주동 측벽에 낙뢰 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축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위실 평면 배치와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단위실은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 등을 확인하여 주시고,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인접한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단위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임의 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비용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따릅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 시, 이사 단위실의 전용 이용 또는 일부 시간대 혼잡으로 인하여, 대기시간 지연 및 사용 불가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준공 전 일정 기간 동안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인수인계 후 운행으로 인한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차 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인허가 내용과 다르게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동 등의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우수조/정화조/중수조 등이 설치되어 장비의 정기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배연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에 초래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 등의 D.A, 부대시설의 실외기 시설, 보안 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 등에 의해 일부 특정 단위실은 조망권, 일조권 및 환경권 침해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내에 전기차충전설비가 계획되어 있으나 인허가 사항이나 주차장의 구조 등에 따라 위치 등이 계획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전기차충전설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차 대수에 전기차충전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주차면은 실제 주차 용도에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시설물(전기차충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경관조명, 옥외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 시설, 수목 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 방지 열선 시설, 제습장치, 냉난방기,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동 상부(옥상, 외벽 등)는 의상용 구조물, 경관조명, 설비 통기 배관, 발전기 연도, 위성 안테나, 공정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 피뢰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조망 간섭, 야간조명의 영향, 눈부심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해 일부 특정 단위실은 침해를 받아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며, 설치 용량 및 수신 감도 등에 따라 위치, 개소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동 상부(3층, 4층, 옥탑) 옥탑구조물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계획되어 있으며 개소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동 상부 3층 및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용 주방배기 탈취유니트가 설치되며, 옥탑에는 정화조 및 중수조용 탈취유니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 가동 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상부는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의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복도 등의 천장 내부 공간이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부대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실내 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기계,전기,통신 설비 관련

- 단위실 분전반(「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설치)과 단위실 통신 단자함(「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별표 3의 주) 3」에 의거 단위실단자함은 주변의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의해 운영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침수 및 결로 발생의 우려가 없는 노출된 장소(신발장, 세탁실, 베란다, 발코니 이외의 장소)에 설치)은 건물주택에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위실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거실 벽면에 벽걸이 TV등 부착물 설치를 위해서는 석고보위에 적절한 보강을 하여야 하며, 못 박음등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 안내서의 유의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 하향식피난구(피난사다리)실은 인접한 두 실이 공유하며 상시 잠금상태로 유지되고 비상시에만 개방 됩니다. 비상시 입주자 단위실이 피난경로가 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피난구는 비상시 사용을 위한 것으로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치 하여서는 안 되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피난구로 인해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관, 신발장, 하향식피난구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은 마감여건 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세대 내 환기 장치로 인해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설비의 환기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는 제품설명서에 따라 필터점검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 세대 욕실 배기팬은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거실, 방, 주방, 화장실등은 당해 층 직배기 방식이 적용되며 별도의 공동 배기덕트 없이, 각 세대 외벽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외부로 직접 배출됩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은 수납 목적이 아닌 후드 장비 및 자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층별 별도로 마련된 실외기실(층별통합실외기)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실외기실 위치를 확인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운전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난방은 도시가스를 이용한 층별 캐스케이드 방식이며 각세대에 바닥 난방으로 설치됩니다.
- 캐스케이드 방식의 가스보일러는 층별 보일러실에 통합 설치됩니다. 보일러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벽 연도를 통해 배출된 배기가스가 인근 실내로 유입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보일러실 위치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식소화기,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으로 인해 주방상부장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균등한 급수공급압력을 계획하고 있으나, 급수펌프 구획별 또는 단지 레벨차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 및 PIT층, 지하주차장에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 내부는 직상층 세대 화장실의 배관이 통과하므로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천장에는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욕실 양변기는 절수형이 설치되므로 세정력이 다소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 천장직부형조명기구를 부착시 천장면과 조명기구 사이에 이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기전력차단장치는 관계법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전열기구 사용시 상시전력과 대기전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관계획

- 외장부 벽에 입면디자인을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호실의 외벽등에 장식용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건축의 외관 디자인(색채,줄눈계획,입면패턴,마감재,옥상구조물 등),공용디자인(동 출입구,지하층 출입구,필로티,캐노피주차장램프,경비실,부대시설등),외부시설물(문주,재활용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소등),조경디자인,BI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사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입면 디자인계획(마감재 종류 및 범위, 형태, 줄눈계획 등)은 현장 및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에 적용된 외관 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등 설치되어 일부 호실은 일조, 조광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호실은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 본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수분양자는 본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수분양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3항에 의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 1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오피스텔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 후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분양광고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오피스텔분양보증(사용검사 전)을 득한 건축물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분양신고확인증 교부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승인 포함)까지	₩250,806,780,000원	제 01222026-105-00003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중 보증사고·보증기간,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해당 오피스텔 및 복리시설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오피스텔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해당 사업장의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오피스텔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분양광고에 따른 분양계약자 모집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합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오피스텔 또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잔금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③ 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 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오피스텔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오피스텔건축사업의 분양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분양광고를 한 일간지(광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합니다)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접수일

※ 오피스텔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분양사업자(매도인)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관리신탁 관련 사항

- ※ 본 건축물은 대리사무 신탁사인 신영부동산신탁(주) 및 분양사업자(사업주체) 겸 매도인인 ㈜비와이씨간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대리사무신탁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신영부동산신탁(주)는 본 사업의 대리사무신탁사로서, 시행사로부터 위임받은 자금 관리 업무, 분양계약 사무 대리 업무인 분양 계약서 날인, 분양계약자 관리, 분양계약서 원본 보관을 수행하며, 분양계약서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시행사인 ㈜비와이씨에게 있습니다.
 -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근거하여 대리사무신탁사 신영부동산신탁(주)는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사업비 등의 집행 등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며, 분양계약에 의한 분양대금 반환, 입점지연 등에 따른 제반 의무, 건축물의 하자 보수 의무는 분양계약서 및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신영부동산신탁(주)에서 관리하며, 토지비, 공사비, 사업비, 중도금대출이자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납부한(할) 분양대금 총액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거, 시행자가 대리사무신탁사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합니다.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소유권이 시행자 겸 토지 소유자인 ㈜비와이씨에서 대리사무신탁사인 신영부동산신탁(주) 명의로 신탁등기를 합니다.
 - 대리사무 신탁사와 무관한 분양계약자의 대출결격사유(신용불량, 한도초과 등) 또는 대출금유기관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계약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대리사무 신탁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며 분양계약자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 VAT포함)

구 분	건축 / 구조 / 토목	전기 / 기계 / 정보통신	소방
회사명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한길엔지니어링	㈜지티엘이엔지
감리금액	2,167,000,000	1,425,600,000	739,200,000

■ 사업관계사

구 분	사업주체(분양사업자 겸 시공사)	신탁업자 겸 공급(분양)대금 관리자	분양대행사
회사명	㈜ 비와이씨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엠디앤씨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8길 27(대림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비동 909호(문정동,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1-1)
법인등록번호	110111-0005995	110111-7126835	110111-093771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등록업자 : (주) 비와이씨
- 등록업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38길 27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150
- 사업방식 : 분양관리신탁
- 공급(분양)대금 관리자 : 신영부동산신탁㈜
- 소유권에 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분양대금 완납 시 개별등기
- 건축허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과 [2026-건축과-신축허가-27]

■ 홈페이지 : <https://gdmetro.com>

■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104-1

■ 분양문의 : 02-841-5950

- ※ 본 분양광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광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분양광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